

『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양진오 의원

2. 제안이유

- 수렵이 선호되지 않거나 기피되고 있는 고라니, 까치 등 유해야생 동물을 포획할 시에 포획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고, 장기간 정비되지 않은 조문의 용어를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 신설(안 제9조)
- 포획신고 및 포상금지급 절차 신설(안 제10조~11조)
- 장기간 정비되지 않은 조문의 용어를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(안 제1조~8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시행규칙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(붙임)
- 부서의견 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

- 현재 수렵이 선호되지 않고 기피되고 있는 고라니, 까치 등에 대한 포획포상금을 신설하여 유해야생동물 개체수를 조정하고, 포획신고 및 포상금지급 절차를 신설하여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
- 집행기관 담당부서의 사전 검토 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